

무주군 공고 제2024-1000호

2024년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 공고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사업)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30.

무주군수

- 사업기간 : 2023. 10. ~ 12.(예산 소진시 까지)
- 총사업비 : 35,000천원(군비)
- 지원금액 : 온라인마케팅 비용의 50%(최대 70만원) / 1인당 2개업소
- 사업대상 : 관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 지원내용 : 사업체의 홍보를 위하여 소요된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원

* 온라인 마케팅 분류

- 키워드광고: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어 입력 시 관련업체의 광고 노출
- 배너광고: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막대 모양(배너)의 광고
- 소셜마케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
- 오픈마켓: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의 매체를 활용
- 중개플랫폼: 배달의민족, 요기요, 직방, 다방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배달비용 제외)

□ 지원대상 : ①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②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있으며 ③ 전년도(2023년) 매출액이 5억원 이하 소상공인

※ ①, ② 신청일 기준이며, 온라인마케팅을 완료한 자에 한함

□ 제외대상 : 프랜차이즈 업소, 유흥 및 향락 관련 업종,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 및 재보증 제한 업종(별첨)

□ 신청기간 : 2024. 10. 30.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산업경제과, 읍·면 산업팀)

□ 신청서류

구분			
연번	서류명	용도	비고
①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신청 및 동의	
②	주민등록 등·초본	주소 확인	우선순위 선정 활용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운영 확인	사업자등록증 아님
④	20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매출액 확인	면제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⑤	통장사본	입금 계좌	지원금 계좌이체
⑥	소상공인 확인 서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상시 근로자 확인 서류)	업종별 상시근로자 확인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확인서(상 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⑦	온라인마케팅 이미지 증빙 자료(화면 캡처 등)	활동 진행 확인	키워드 검색, SNS 등 온라인 마케팅 활 동 증빙 *사이트주소 등 확인가능한 이미지 첨부 *대행사 이용 시 견적서 등 세부내역서 첨부
⑧	소요비용 증빙 자료 (마케팅 업체 사업자등록증 포함)	소요비용 확인	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or 카드매출전표+카드사본

※ ② ~ ⑥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단, ④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및 ⑤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 제외)

□ 선정방법(우선순위)

- ① 최근 2년 이내 동일한 사업을 지원 받지 않은 소상공인
- ② 전년도(2023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 ③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소상공인
- ④ 동 순위일 경우 신청일 우선

□ 문 의 처

접수처	전화번호
산업경제과	320-2357
무주읍	320-5723
무풍면	320-5773
설천면	320-5823
적상면	320-5872
안성면	320-5933
부남면	320-595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2024년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
2. 수집·이용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 정보, 전화번호, 이메일 등
3.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항,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통장사본 등)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4년 월 일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참고 1

보증 제한업종

표준산업 분 류	업 종
46102 중	담배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신설 2010.12.15)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신설 2010.12.15.)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10.12.15., 2020.9.28.)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 는 제외(개정 2010.12.15., 2022.3.1.)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신설 2009.1.1)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	<p>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신설2009.1.16., 개정 2022.3.1.)</p> <p>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신설 2010.12.15.), 개정 2011.8.1.)</p>

참고 2

재보증 제한업종(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 5)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삭 제>(2020.10.12.)	<삭 제>(2020.10.12.)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삭 제>(2020.10.12.)	<삭 제>(2020.10.12.)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 ^{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 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